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라 도 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 제출일자 : 2005년 8월 26일
- ☐ 제 출 자 : 김성배 의원 외 7인

2. 위원회 회부

- ☐ 회부일자 : 2005년 9월 5일
- ☐ 상정일자 : 2005년 9월 8일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16058호, 2005. 8. 5)되어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상향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 법 개정으로 조례 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함
- ☐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조정[안 제3조 제1항]
 - 회기수당 일 70,000원을 일 100,000원으로 30,000원 상향

5. 검토의견

-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605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경우
일 70,000원 이내에서 일 100,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본 개정안은 회기수당을 일 70,000원을 30,000원 인상하여
일 10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다만, 부칙에서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토록 한 사항에 대해
서는 서울시와 24개 구청을 조사(별첨)한 바 회기수당 지급기
준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로 소급적용하고 있어 문제
는 없으나, 행정자치부(공법석 서기관, 전화3703-4841)에 유선
으로 질의한바 가능한 소급적용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조례를
개정 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음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 ①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5, 회기수당(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범위
시·도 의회 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일 100,000원 이내	

회기수당 조례 개정 현황

(2005.9.5일 기준)

연번	구의회 명	회기수당 지급 기준일	비고
1	중 구	8.5	
2	용산구	8.5	
3	성동구	공포한 날로부터	
4	광진구	8.5	
5	동대문구	공포한 날로 부터	
6	중랑구	8.5	
7	성북구	8.5	
8	강북구	8.5	
9	도봉구	8.5	
10	노원구	8.5	
11	은평구	8.5	
12	서대문구	소급적용 예정	
13	마포구	8.5	
14	양천구	8.5	
15	강서구	9.1	
16	구로구	8.5	
17	금천구	8월말	
18	영등포구	소급적용 예정	
19	동작구	8.5	
20	관악구	8.8	
21	서초구	8.5	
22	강남구	8.5	
23	송파구	8.30	
24	강동구	8.5	
25	서울시	8.30	